

서울특별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571

제출년월일 : 2020년 5월 25일
제 출 자 : 서울특별시장

1. 제안이유

세무대리인을 선임할 경제적 능력이 부족한 납세자에 대하여 과세전적부 심사청구 또는 이의신청 시 지방자치단체가 무보수 대리인을 선정하여 지원하는 내용으로 「지방세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 30317호, 2019. 12. 31.)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절차 등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시·도 심사청구 제도 폐지 등 상위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시·도 심사청구 삭제(안 제3조제2항 및 제3항)
- 나. 세무조사 정의 신설 반영(안 제3조제4항)
- 다. 선정 대리인 신청인의 소유재산 평가방법(안 제5조의2)
- 라. 서울특별시 선정 대리인의 위촉·해촉 등(안 제5조의3)
- 마. 선정 대리인 신청·통지 등(안 제5조의4)
- 바. 지방세 심의위원회 위원의 정수 확대(안 제7조제2항)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지방세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등

나. 예산조치: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참조

다. 기 타

1) 신·구조문 대비표: 별도 첨부

2) 입법예고('20. 2. 27.~3. 18.) 결과: 의견없음

서울특별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4호나목 중 “소송계류 중(법에 따른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를 “소송(법에 따른 이의신청·심판청구”로, “심사청구가 진행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를 “심사청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소송 등”이라 한다)이 진행 중”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후단 중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또는 소송”을 “소송 등”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76조제2항제2호”를 “법 제2조제1항제36호”로, “지방세의 부과·징수에 필요한 조사”를 “세무조사”로 한다.

제5조의2부터 제5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소유 재산의 평가방법) 영 제62조의2제2항제2호 각 목의 소유 재산 평가는 「지방세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다.

제5조의3(서울특별시 선정 대리인의 위촉·해촉 등) ① 시장은 영 제62조의2제6항에 따라 변호사, 세무사, 「세무사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로서 관련 경력 3년 이상인 사람을 서울특별시 선정 대리인(이하 “선정 대리인”이라 한다)으로 위촉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촉을 배제하여야 한다.

1. 「변호사법」 제90조 및 제91조에 의한 징계처분 또는 「세무사법」 제17조에 의한 징계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2. 이해관계인으로부터 금품·향응을 제공받거나 청탁 또는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하는 등 그 직무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제1호부터 제2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 ② 선정 대리인으로 위촉된 사람은 규칙에서 정하는 ‘서울특별시 선정 대리인 위촉 동의서’ 및 ‘서약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선정 대리인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④ 시장은 선정 대리인이 제1항 각 호에 해당하거나 직무수행의 불성실 또는 그 밖에 해촉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 임기중이라도 선정 대리인을 해촉하여야 한다.
 - ⑤ 시장은 선정 대리인이 제1항 각 호에 해당되어 해촉되는 경우에는 다른 선정 대리인을 지정하여 불복 대리 업무를 계속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⑥ 선정 대리인은 임기가 종료하더라도 임기 만료 전에 지정된 사건에 대한 대리 업무를 계속 수행하여야 한다.
 - ⑦ 선정 대리인은 불복 대리 과정에서 알게 된 납세자에 관한 정보

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⑧ 시장은 선정 대리인 활동이 우수한 사람에게 표창을 하거나 각종 위원회 위원 위촉 시 우대할 수 있다. 다만, 제1항 각 호의 위촉 배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⑨ 시장은 선정 대리인이 지식기부를 통해 불복업무를 대리함에도 불구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선정 대리인에게 실비변상적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5조의4(선정 대리인 신청·통지 등) ① 대리인이 없는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인 또는 이의신청인(이하 “청구인등”이라 한다) 중 법 제93조의2 및 영 제62조의2제1항에 따라 선정 대리인의 선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규칙에서 정하는 ‘서울특별시 선정 대리인 선정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법 제93조의2제2항에 따른 선정 대리인 신청 결과를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선정 대리인을 지정한 경우 청구인등의 불복청구서 등 관련 서류를 지체없이 선정 대리인에게 전달하고 권리구제에 필요한 사항을 협조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선정 대리인을 지정한 경우 청구 또는 신청일자·불복청구인·선정 대리인 지정일자·결정내용 등을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⑤ 영 제62조의2제5항에 따라 구청장이 대리인을 선정하고자 시장

에게 선정 대리인 추천을 요청하는 경우 시장은 빠른 시일 내에 구청장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제7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영 제83조제1항제1호에 따라 서울특별시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
의 정수는 35명 이내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2항
제4호나목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5조의2부터 제5조의4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
행 전에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또는 이의신청을 하고 이 조례 시행
이후 선정 대리인의 선정을 신청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3조(선정 대리인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법 제93
조의2 및 영 제62조의2에 따른 선정 대리인으로 위촉된 사람은 이
조례에 따른 선정 대리인으로 위촉된 것으로 본다.

② 이 경우 선정 대리인의 임기의 기산일은 최초 위촉된 날로 한
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3조(부과·징수의 권한 위임 등)</p> <p>① (생 략)</p> <p>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세를 직접 부과·징수한다.</p> <p>1.~3. (생 략)</p> <p>4. 구청장이 부과한 시세 중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의 다음 날 현재 건당 1천만원 이상 체납액(가산금을 제외한다)이 있는 체납자의 해당 구 시세 체납액 전부(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세 체납액은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고액체납액”이라 한다)가. (생 략)</p> <p>나. 부과한 회계연도가 끝나는 다음 날 현재 <u>소송계류 중(법에 따른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 및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가 진행 중인 경우를 포함</u></p>	<p>제3조(부과·징수의 권한 위임 등)</p> <p>① (현행과 같음)</p> <p>② ----- ----- ----- -----.</p> <p>1.~3. (현행과 같음)</p> <p>4. ----- ----- ----- ----- ----- ----- ----- -----</p> <p>가. (현행과 같음)</p> <p>나. ----- ----- <u>소송(법에 따른 이의신청·심판청구</u> ----- ----- <u>심사청구를 포함한다.</u> 이하 이</p>

현행	개정안
<p><u>한다</u>)이거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회생절차에 따라 회생채권으로 확정된 시세 체납액</p> <p>다. (생략)</p> <p>③ 고액체납액에 대해서 구청장이 한 처분은 시장이 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구청장이 한 처분에 대하여 <u>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또는 소송</u>이 제기되는 경우에는 구청장이 이를 수행한다.</p> <p>④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u>법 제76조제2항제2호</u>에 따른 <u>지방세의 부과·징수에 필요한 조사</u>(이하 “세무조사”라 한다)를 직접 할 수 있다.</p> <p>1.~4. (생략)</p> <p><u><신설></u></p>	<p><u>조에서 “소송 등”이라 한다</u>)이 진행 중-----</p> <p>-----</p> <p>-----</p> <p>-----</p> <p>다. (현행과 같음)</p> <p>③ -----</p> <p>-----</p> <p>-----</p> <p>----- <u>소송 등</u>-----</p> <p>-----</p> <p>-----</p> <p>④ -----</p> <p>-----</p> <p>----- <u>법 제2조제1항제36호</u>----- <u>세무조사</u>-----</p> <p>-----</p> <p>-----</p> <p>1.~4. (현행과 같음)</p> <p><u>제5조의2(소유 재산의 평가방법)</u></p> <p><u>영 제62조의2제2항제2호</u> 각 목의 소유 재산 평가는 「지방세법</p>

현행	개정안
<p><u><신 설></u></p>	<p>」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다.</p> <p>제5조의3(서울특별시 선정 대리인의 위촉·해촉 등) ① 시장은 영 제62조의2제6항에 따라 변호사, 세무사, 「세무사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등록된 공인회계사로서 관련 경력 3년 이상인 사람을 서울특별시 선정 대리인(이하 “선정 대리인”이라 한다)으로 위촉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촉을 배제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변호사법」 제90조 및 제91조에 의한 징계처분 또는 「세무사법」 제17조에 의한 징계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2. 이해관계인으로부터 금품·향응을 제공받거나 청탁 또는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하는 등 그 직무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현행	개정안
	<p>3. 그 밖에 제1호부터 제2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p> <p>② 선정 대리인으로 위촉된 사람은 규칙에서 정하는 ‘서울특별시 선정 대리인 위촉 동의서’ 및 ‘서약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③ 선정 대리인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p> <p>④ 시장은 선정 대리인이 제1항 각 호에 해당하거나 직무수행의 불성실 또는 그 밖에 해촉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 임기 중이라도 선정 대리인을 해촉하여야 한다.</p> <p>⑤ 시장은 선정 대리인이 제1항 각 호에 해당되어 해촉되는 경우에는 다른 선정 대리인을 지정하여 불복 대리 업무를 계속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p> <p>⑥ 선정 대리인은 임기가 종료하더라도 임기 만료 전에 지정</p>

현행	개정안
<p><신설></p>	<p>된 사건에 대한 대리 업무를 계속 수행하여야 한다.</p> <p>⑦ 선정 대리인은 불복 대리 과정에서 알게 된 납세자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p> <p>⑧ 시장은 선정 대리인 활동이 우수한 사람에게 표창을 하거나 각종 위원회 위원 위촉 시 우대할 수 있다. 다만, 제1항 각 호의 위촉 배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⑨ 시장은 선정 대리인이 지식기부를 통해 불복업무를 대리함에도 불구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선정 대리인에게 실비변상적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p> <p>제5조의4(선정 대리인 신청·통지 등) ① 대리인이 없는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인 또는 이의신청인(이하 “청구인등”이라 한다) 중 법 제93조의2 및 영 제62조의2 제1항에 따라 선정 대리인의 선</p>

현행	개정안
	<p><u>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규칙에서 정하는 ‘서울특별시 선정 대리인 선정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u></p> <p><u>② 시장은 법 제93조의2제2항에 따른 선정 대리인 신청 결과를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u></p> <p><u>③ 시장은 선정 대리인을 지정한 경우 청구인등의 불복청구서 등 관련 서류를 지체없이 선정 대리인에게 전달하고 권리구제에 필요한 사항을 협조하여야 한다.</u></p> <p><u>④ 시장은 선정 대리인을 지정한 경우 청구 또는 신청일자·불복청구인·선정 대리인 지정일자·결정내용 등을 규칙에 따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u></p> <p><u>⑤ 영 제62조의2제5항에 따라 구청장이 대리인을 선정하고자 시장에게 선정 대리인 추천을 요청하는 경우 시장은 빠른 시일 내에 구청장에게 추천하여야</u></p>

현행	개정안
<p>제7조(지방세심의위원회) (생략)</p> <p><u><신설></u></p>	<p><u>한다.</u></p> <p>제7조(지방세심의위원회)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p> <p><u>② 영 제83조제1항제1호에 따라 서울특별시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의 정수는 35명 이내로 한다.</u></p>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서울특별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비용발생 요인

해당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에 해당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① 의원·위원회·시장·교육감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제안 또는 제출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0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미첨부 사유

서울특별시 선정 대리인에 대한 보수 지급에 따라 예상되는 비용은 연평균 5억원 미만이며, 다른 개정 조항은 지방세기본법 개정에 따른 조문 정비 등이므로 비용 발생의 여지가 없음

4. 작성자 : 재무국 세제과 정주영(2133-3357)